유형 비과세 내용 (조세특례제한법 조문) 1. 국가･ 지방자치 단체 감면(농특세법§4(1)) ① 국가(외국정부 포함)･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.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관련 단체에 대한 감면 (농특세법§4(2)) (법령§4①(1)) ①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(조특법§66)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(조특법§67) ③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(조특법§68) ④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(조특법§72①) \* 조세특례제한법§72①(1)의 신용협동조합･새마을금고, (5)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, (8)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비과세 제외 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(조특법§102) ⑥ 어업협정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등 비과세(조특법§104의2)